

2022 SPA 형사소송법 판례 · 기출증보판 증보판 정오표(1쇄 기준) 2

[2권]

p.239 ㉔ 증거능력인정요건 중 ‘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’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

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	<p>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인 피고인의 자필이거나 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(제313조 제1항 본문),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(제313조 제1항 단서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313조 제1항 단서 적용(대판 2001.9.4, 2000도1743) ▶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 ⇨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 증명되었다면 증거 가능(제313조 제2항)
--------------------	---



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	<p>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인 피고인의 자필이거나 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(제313조 제1항 본문),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(제313조 제1항 단서)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(대판 2001.9.4, 2000도174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 ⇨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 증명되었다면 증거 가능(제313조 제2항)
--------------------	---

p.256 ㉞ ㉟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⇨ ㉞ ㉟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실질적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